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28 선고 2020가단547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0. 9. 7.

판결 선고2020. 9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,806,508원 및 그 중 97,658,266원에 대하여 2020. 1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D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E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조상민

별지